

연세사학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연세사학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등 역사학 관계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 역사학 단체 상호간 학술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공동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 도서 간행
4. 국내 및 국제 역사학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종신회원 :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3.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칙과 이 학회의 제반 결정사항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지역이사 및 운영이사 10명 내외
4. 편집위원 10명 이내
5. 간사 1명 내외

제7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편집위원과 이사 및 간사를 임명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이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3. 지역이사는 각 지역의 회원을 대표하여 지역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담한다. 운영이사는 총무, 편집(출판), 연구(학술정보) 등 이 학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4. 간사는 학회 운영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및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1조(구성)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을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권한) 이 학회의 학회지(『學林』)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이나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총회

제13조(구성) 이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회의 업무 보고 및 인준
5. 중요 사업계획의 토론 및 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관련 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15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學林』 편집규정

제정 : 2015.6.1.

개정 : 2017.12.8.

2차 개정 : 2020.9.2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사학연구회의 연구기관지 『學林』의 간행을 위한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록내용) 『學林』은 연세사학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특집, 연구논문, 연구동향, 연구노트, 비평논문, 시론(時論), 서평(연구논평), 자료 등을 수록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9.>

제3조(발간횟수) 『學林』은 연2회 간행(3월 31일, 9월 30일)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17.12.8.>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편집위원회는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을 포함하여 학계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분야 중진학자 13인 이하(교내 7인 이하, 교외 6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 업적 및 역량이 인정되는 자로서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집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 연구논문과 논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1차 심사위원의 선정 및 처리
3. 1차 심사된 원고에 대한 2차 심사
4. 『學林』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6조(논문심사)

1. 『學林』의 목적과 학술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교내외 전문학자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3. 투고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1차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소정의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5.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개정: 2020.09.25.>

- 1) 게재 가능: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을 저자에게 위임할 만한 논문
- 3)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초심 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판정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음 간기에 발행되는 『學林』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심사위원 전원에게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8.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원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 후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10.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

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저작권의 귀속) 『學林』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회에 속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연구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세사학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5.6.1.

개정 : 2016.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사학연구회(이하 연구회로 약칭)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논문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논문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논문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學林』 또는 본 연구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총칙.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본 연구회의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각 부장들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회 회장이 맡는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 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연구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장의 책임 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2016.12.9.>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연구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제외·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외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①항 또는 제③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야 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징계)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學林』 및 본 연구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學林』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 동안 『學林』에의 논문 투고 및 본 연구회가 주관하는 일체의 학술활동을 금지
3. 본 연구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최초 발간되는 『學林』에 판정 내용 공시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22조(재심의) 피제소자 또는 제소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회 운영원칙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5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學林』 투고규정

제정 : 2015.6.1.

개정 : 2017.2.2.

2차 개정 : 2019.3.14.

1. 논문의 주제

-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분야.
- * 역사연구의 다각화와 그 현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내용.

2. 논문의 종류

- 1) 특집원고 : 기획된 주제에 대하여 본 연구회의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의 논평 및 종합토론을 거쳐 선택된 논문.
- 2) 일반투고 : 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본 연구회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 가운데 본 연구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채택된 논문.

3. 논문의 공모방법

- 1) 다른 학술잡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하지 않은 순수 학술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학림 JAMS 홈페이지 (<https://bakrim.jams.or.kr>)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 : 2019.3.14.>
- 3) 원고는 반드시 한글(HWP, 97버전 이상)로 작성해야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때 게재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의 분량이 200매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분량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원고의 분량이

250매를 초과할 경우 게재할 수 없다.

- 4) 원고에는 국·영문초록과 국·영문핵심어(5~6개), 참고문헌을 첨부하며,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6매 이내의 분량으로, 영문초록은 200 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개정 : 2017.2.2.>
- 5) 논문투고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구체적인 규정은 본 연구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한다.
- 6) 투고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한다. <개정 : 2017.2.2.>

4. 제출처

- <https://hakrim.jams.or.kr> 에 회원가입 후 논문 제출 <개정 : 2019.3.14.>

5. 기타

- 1) 제출된 원고는 본 연구회의 편집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 2)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분량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그 순서를 결정한다 (매년 3, 9월 간기).

『學林』 원고작성 원칙

제정 : 2015.6.1.

개정 : 2017.2.2.

2차 개정 : 2019.12.13.

1. 논문제목, 차례, 필자명, 국문초록

- 1) 차례에는 章과 節만 표시하며, 章은 1. 2. 3.으로, 節은 1) 2) 3)으로 한다.
- 2) 필자소개는 ‘성명, 소속, 직위’의 형식으로 한다.
예) 홍길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정 : 2019.12.13.>
-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6매 이내의 분량으로 하며, 5~6개의 국문 핵심어를 게재한다.

2. 본문

- 1) 논문의 본문은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 2)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투고된 경우,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제반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 3) 한자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다른 외국어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외국어)’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 4) 章·節의 표시형식은 차례와 같게 한다.

3. 인용문

- 1) 한자 또는 외국어의 문장 인용은 본문에 번역문을 싣고, 원문을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자 등

원문을 본문에 노출시킬 수 있다.

4. 각주

1) 書誌 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① 한국어·중국어·일본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② 기타 외국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A. R. Zolberg,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1972, pp.183~207.

③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명, 책명, 출판지 : 출판사명, 출판년도, 쪽수의 순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명, 정기간행물명 및 호수, 출판지 : 간행단체명, 간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 단, 국내에서 발행된 서적의 경우에는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서얼연구』, 서울 : 홍길동출판사, 2001, 100~101쪽.

홍길동, 「홍길동 연구」, 『서얼연구』 1, 서울 : 서얼학회, 2001, 100 ~101쪽.

④ 인용서적이 편서일 경우에는 편자의 이름 뒤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예) 홍길동 편, 『홍길동연구』, 서울 : 홍길동출판사, 1992, 12쪽.

홍길동, 「홍길동의 생애」, 허균 편, 『홍길동』, 서울 : 홍길동출판사, 1996, 12쪽.

⑤ 번역서의 경우에는 다음 형식을 따른다.

예) 로버트 단턴 지음,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1996, 100쪽.

⑥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예1) 같은 논문이나 책이 반복될 때 : 홍길동, 앞의 글(or 앞의

책), 2001, 100쪽.

예2) 연속된 각주 번호로 인용될 때 : 홍길동, 위의 글(or 위의 책), 2001, 100쪽.

⑦ 사료(자료) 인용 1 :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

예1) 『高麗史』 卷76, 志3, 百官1 贊成事(서울문화사 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예2) 『世宗實錄』 卷9, 世宗 6년 5월 庚子(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⑧ 사료(자료) 인용 2 :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⑨ 기타

5. 표·그림

<표 1> 1900년 미곡 생산액 (단위 : 석)

출전 : 농수산부, 『한국농업사』, 한국출판사, 2000, 100쪽.

비고 : (필요할 경우, 표에 대한 註記)

6. 참고문헌

- 1) 논문 작성에 참고한 문헌을 논문 뒤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 2) 서지사항 표시 방법은 각주 작성 방법과 같게 한다.

7. 영문 초록

- 1) 왼쪽 상단에 <Abstract>를 표시한다.
- 2) 漢字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영문(漢字)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영문 필자소개

영문 이름은 *Hong, Gil-Dong*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다음의 형식으로 필자 소개를 한다.

‘성명, 소속, 직위’

예) *Hong, Gil-Dong,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Professor.*

<개정 : 2019.12.13.>

4) 한자의 영문표기는 중국어의 경우는 漢語拼音의 표기에 따르고, 한국의 고유명사나 특수용어는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5) 영문 초록 가운데 人名과 王名은 처음 한 번은 반드시 生卒·在位 연대를 표기한다.

6) 동양 古典 등은 『 』로, 篇名은 「 」을 사용하고, 글자체는 반드시 이탤릭(*Italic*)체로 표기한다.

7)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5~6개의 영문 핵심어를 게재한다. <개정 : 2017.2.2.>

8.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學林』의 관례를 따른다.